

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77호, 2024. 12. 30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8, 8834

I. 2025년도 "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"과 "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"

1. 2025년도 "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"은 별지와 같다.
2. 2025년도 "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"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.6/1,000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